



즉시 배포용: 2022년 12월 16일

KATHY HOCHUL 주지사

**HOCHUL 주지사, 결혼식, 축하 행사, 기타 야외 행사에서 술 음료 허용 범위 준수를 돕는 법안에 서명**

***법안(S.9049/A.10176)에 따라 케이터링 업체는 야외 케이터링 면허를 신청해야 행사장 내 술 서빙 가능***

***과거 케이터링 면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케이터링 업체는 임시 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장 외 행사장에서 맥주, 와인, 사이다 등을 서빙***

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류관리법(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)을 현대화하는 법안(S.9049/A.10176)에 서명하여 뉴욕주 주류 관리청(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, SLA)에 케이터링 시설 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결혼식, 예식, 기타 행사에서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케이터링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.

**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이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신혼 부부를 위해 잔을 들어 봅시다. 새로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, 우리는 케이터링 업체를 비롯해 기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. 또한 결혼한 부부들이 언제나 꿈꿔왔던 결혼식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저는 이번 법안에 서명하여 우리의 호스피탈리티 부문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."

법안(S.9049/A.10176)에 따라 주류관리법을 개정해 다이닝 시설이 없는 행사장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케이터링 업체에 대한 신규 면허를 신설합니다. 주 전역에서 운영 중인 다수의 케이터링 업체는 주방과 최소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식장 등 케이터링 면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이러한 시설은 임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영업장 외의 행사장에서 맥주, 와인, 사이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법안에 따라, 주방을 가지고 있지만 50명을 수용할 시설이 없는 케이터링 업체는 이제 영업장 외 케이터링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행사장에서 맥주, 와인, 사이다 등 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**Anna M. Kapl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뉴욕의 오래되고 복잡한 주류법 때문에 소규모 케이터링 업체는 행사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사업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많은 중소 업체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, 복잡하고 비싼 규정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제 법안에 서명하여 소규모

케이타링 업체를 지원하고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는 뉴욕의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."

**Fred Thiele**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주류관리법 조항을 현대화하여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케이타링 산업에 더 큰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. 우리 소상공인이 더욱 활발하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뉴욕주 주류관리청과 **Anna Kaplan** 상원의원의 노력에 협력할 수 있어 기쁩니다.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."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